# 50인 이상 사업장도 週5일제 … 병원·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또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다.

### ◇세제·금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39개 품목 대상 할당관세 제도 운용** =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운영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니켈괴, 니켈분, 페로니켈, 야자박, 코발트 분, 생사 등이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품목 수의 99.2%인 1만2천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 국세심판 청구서 접수 시간이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야간문서 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7월부터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절차가 생략된다.

### ◇ 행정·법무·국방·병무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의회 위원,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상반기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가액변동 신고재산의 범위가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 고지 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 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 7월 중에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 =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200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공공기관·국민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 국가보훈처가 1962년부터 실시하던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업무가 7월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된다. 은행 대부이율과 국가보훈처 대부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하며, 기타 대부종류와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현행의 국가보훈처 대부와 동일한 수준이 제공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 =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해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가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

**▲본인부담제 시행** =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 · 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선택 병의원제 시행** =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 계층에도 지급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의무 완화** =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영양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 12월 1일부터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과,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된다.

### ◇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기간제 · 단시간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고제도 개선**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건에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으로서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화** =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주40시간제 확대** =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 ◇ 산업

**▲어린이 대상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 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비자 체류기한 확대** =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석사후경력 3년 요).박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방송국 가운데 출력이 각각 30W, 60W를 넘는 경우 전자파 강도의 측정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무선국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군 현역병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감면** =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군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바꿈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 일일 평균 이용자수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 실시** =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결합판매제 시행** =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가계수표대월자 이자부담 감소** = 우정사업본부가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 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했으나,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평균금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인하된다.

### ◇에너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제 도입** =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량과 기준상태(0℃, 1기압)에서의 가스량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검침량(㎥) × 보정계수 × 단위당 요금(원/㎥) 방식으로 산출된다.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범위 확대**=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용제를 휘발유용 내지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용제 또는 용제와 석유제품 혼합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돼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용 전기시설 응급조치제 도입**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자가 전기사용의 고충을 신고(1588-7500)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4시간 긴급출동해 해결해주는 응급조치가 도입된다.

### ◇ 환경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대상 확대** =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에 서비스가 새로 포함된다.

**▲총중량 5.5t초과 경유차량 부하검사 실시** = 기존에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 총중량 5.5t초과 경유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4대강 수계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 = 전국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해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해 조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토양오염 방지 '클린주유소' 지정제** = 이중벽 탱크와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토양오염 물질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유류 누출시 누유 감지장치를 통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유소에 대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해준다.

### ◇농림·해양

**▲농지내 축사 설치 용이** = 7월4일부터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농지내 축사 설치시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하다.

**▲농지 전용 허가 가능시설 확대** =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전용 허가 대상시설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게 7월4일부터 조정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 제조시설의 농지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전용 가능시설로 인정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범위 확대** = 7월4일부터 농림부장관 승인이 없어도 시·도지사가 1만㎡이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 아이스크림에도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의 경우 매우 낮은 온도에서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 제조일·유통기한 등 날짜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제 제조 연월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시스템 운영** = 하반기 물류정책기본법 제정과 함께 해외투자시 채무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금융시스템을 마련,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거점 확보를 지원한다.

**▲낙도보조항로 운항선사 경쟁입찰로 선정** = 낙도보조항로 운영사 선정에 하반기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처음 지정된 운항선사의 운영권이 계속 유지돼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족 자원 관리 강화** = 조기류와 대게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포획어구의 그물코 제한 등이 강화된다. 또 연근해 통발어업의 어구 사용량도 제한된다.

**▲산지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위한 제도 개선** =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사찰 신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재해방지시설과 산촌개발사업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산지전용기간 내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조성비를 환급해준다.

아울러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불법 산지 전용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3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 문화·관광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 7월1일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입장권가액(요금표상 실제 입장권 금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관광지 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 =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 4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어든다.

관광지·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련 각종 인·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일괄 처리가 가능해진다.

**▲관광사업시설 중 부대시설 처분 허용** = 관광사업자가 객실이나 카지노 등 핵심 시설을 제외한 관광사업 부대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대시설은 임대 및 위탁경영만 허용돼 관광사업자의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려웠다.

**▲관광숙박시설-골프장 연계 회원 모집 허용** =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한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묶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주민투표로 지자체장 해직도 가능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차등화
장례비 지급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업·휴직자 6개월간 건보료 지원
콘도·골프장 패키지 회원모집 허용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40종 추가금지